

#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5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8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~2조)

- 근거법규,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리

나. 평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3~13조)

-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시
-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·운영·직무 명시
- 분과위원회 근거, 수당 등 명시

다. 인구정책 사업 지원 및 특별법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(안 제14~16조)

-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내용
- 문화·관광·체육시설 설치 지원 내용
- 노후·유희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등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붙임 2 참조 )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3. 7. 28. ~ 2023. 8. 1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반영

##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를 따른다.

**제3조(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)**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소속으로 평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
3. 법 제25조제3항 및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
4.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·유희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

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4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.)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·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행정지원국장, 경제건설국장, 기획실장, 보건의료원장, 농업기술센터 소장, 인구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

2. 위촉직 위원

가.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

나.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다.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
라.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

④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구성한다.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7조(위원의 해촉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**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3.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 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
**제9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0조(위원회의 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.)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.

1. 정기회의 :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

가.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평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 
연도별 시행계획

나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 
사항

2. 임시회의 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군수의 요구가 있는  
경우

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
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(開議) 요  
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

2.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

3.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

4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 
우

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 
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1조(분과위원회)**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  
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 
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12조(위원회의 간사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

두되,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 업무의 담당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
2.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·보존에 관한 사무
3.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

**제13조(수당 등)** 군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4조(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)**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보육·교육·의료·주거·교통·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2. 가족친화 및 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적용할 수 있다.

1.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사업
2.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·중장년 정착 지원사업
3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업
4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·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

**제15조(문화·관광·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)**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서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 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의 설치·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절차·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.

**제16조(노후·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)**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·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.

1.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2.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노후·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·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 법령 발취

## □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인구감소지역”이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
2. “생활인구”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
  - 나. 통근, 통학, 관광, 휴양, 업무,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  - 다.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
**제6조(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**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시·군·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
1.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, 인구가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
  2.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·군·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
  3. 시·군·구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
  4. 시·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방안
  5.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
  6. 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·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
  7. 제15조에 따른 시·군·구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
  8. 시·군·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
  9. 그 밖에 시·군·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·군·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

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, 제9조에 따른 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·군·구기본계획을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⑥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군·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**제9조(시·군·구 및 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)** ① 인

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위원회”라 한다)를,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위원회”라 한다)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.

1. 제6조에 따른 시·군·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·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

2. 제32조에 따른 시·군·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, 시·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

3.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

4.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

5.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② 시·군·구위원회와 시·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, 지역대표성,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
  2.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 3.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
- ③ 시·도와 시·군·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7조에 따른 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·도위원회와 시·군·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군·구위원회와 시·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**제11조(생활권 연계·협력 추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)와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(이하 “생활권”이라 한다)을 설정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)와 협의를 거쳐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, 같은 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,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을 구성할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권 구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권고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권 단위로 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 등 연계·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·도기본계획 및 시·군·구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⑤ 국가는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계·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·교육·의료·환경·복지·문화·교통 등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5조(생활인구의 확대 지원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.

**제25조(문화기반의 확충)** 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(「도서관법」 제4조제2항 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·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6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순회 문화공연·전시 등을 통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직접 제공하거나 문화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·예술·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27조(노후·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·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·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노후·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. 이 경우 노후·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

### 제13조(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을 설치·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의 설치·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·허가·승인·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
2.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의 설치·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

# 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## 1. 비용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## 2. 미침부 근거 규정

○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

## 3. 미침부 사유

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정책담당관 김두기
연락처	(033) 330-2850